



인터넷 익명게시판 추가 대응방안 검토

2015. 3.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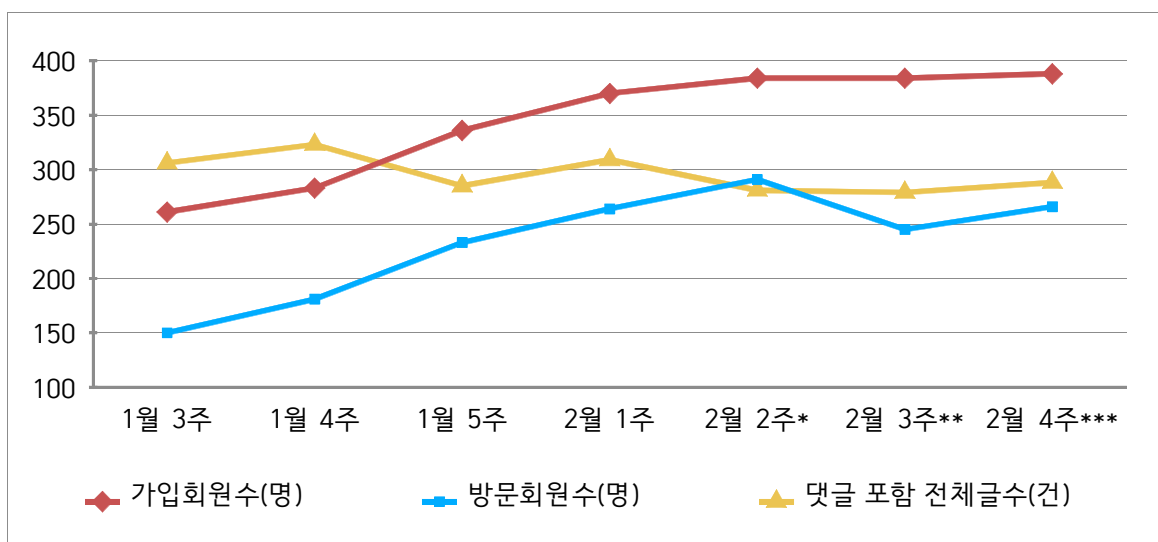
기획조정실

1. 검토 배경

-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2015. 3. 11. 개최 예정 ⇨ 익명 활동을 포함한 법관의 인터넷 활동에 관한 권고의견 의결 예상
- 권고의견 의결을 전후한 추가 대응방안 모색 ⇨ 시기와 내용면에서 권고의견과 결합하여 효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 검토
- ①익명 카페 활동의 양적, 질적 변화와 민감 게시글 삭제에 관한 내부 논의를 살펴본 후, ②정무적인 관점에서 대응방안 검토함

2. 카페 활동 추이

- 2월 둘째주*(2. 12. 이 모 부장사건 언론보도) 전후 활동 量的 분석



** (2월 3주) 2. 22. 이 모 전 판사, 기자가 위 카페 존부를 자신에게 문의하였음을 공개

*** (2월 4주) 2. 23. 처장님, 법관에 대한 당부말씀 코트넷 공지 및 전체 메일

**** (3월 1주) 3. 1. 카페 회원, 민감 내용 게시글에 대한 삭제 방안 권유글 게시



- 매주 30명까지 증가하던 가입자 수 ⇨ 4주간 3명 증가
- 8명의 운영자 중 1명 2. 21. 사임
- 설연휴 및 인사이드(2월 3주) 이후에도 활동 반등 조짐 없음

■ 전후 활동 質的 분석 ⇨ 민감한 내용의 본글 및 댓글 추출

	카페 전체 총페이지뷰	민감 본글 (댓글)수	주제
1월 3주	1,302	7(50)	대법관 제청, 기업인 가석방, 검찰비판
1월 4주	2,010	4(57)	땅콩회항, 판사구속, 상고법원
1월 5주	3,209	5(58)	전관예우, 법원내 세대간 갈등, 상고법원
2월 1주	4,245	8(106)	신○○ 대법관 퇴임, 대법관 제청, 부의 세습, 상고법원
2월 2주 (이○○ 부장사건 보도)	3,137	4(36)	원세훈 사건, 대법관 제청, 검찰비판, 언론과재벌
2월 3주 (기자 취재 시도 공개)	642	0	
2월 4주 (처장님 당부사항 공지)	1,160	0	
3월 1주 (민감글 삭제 내부제안)	통계미제공	1(9)	김영란법(전문 별지1 첨부) 부장 기록 미검토 글 1건 삭제

- 2월 3주 이후 민감한 글 사실상 없음
- 2. 12. 이 모 부장 사태 직후에는 여전히 '검찰 출신 대법관', '재벌2세' 등 민감한 주제를 다룬 글이 일부 있었으나, 2. 22. 기자 취재 시도 사실 공개 이후로는 2주가 지나도록 김영란법에 관한 1건 뿐임
- 순수 업무 관련 노하우 공유 및 질문 글이 13건(댓글 70개)으로 다수이고, 일상생활 관련글이 나머지를 이룸

■ 유출가능성에 대한 내부 제안 및 논의 결과

- 1차 논의 요약(이 모 부장 사태 전인 1. 30.경)
- 가입 법관 1인이 '외부유출시 문제소지가 큰 게시글에 대해 관리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안



- 토론이 이루어졌으나, 다수 회원이 '동료법관을 믿자, 문제되면 그 때 폐쇄하자'는 정도의 안일한 입장을 보임
- 운영자도 '동료법관의 글의 내용까지 관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현행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공지함
- 이 모 부장 사태 직후
 - 카페 게시글도 위험한 것 아니냐, 근무시간에 글을 올리기 부담스럽다 는 등의 염려 댓글
- 2차 논의(처장님 공지글 게시 후인 2. 27.~3. 4. 댓글전문 별지2 첨부)
 - 가입 법관 1인이 '민감 사안에 관한 글은 단기간 게시 후 자진 삭제하는 것이 결국 카페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제안
 - 위 글에 동의하면서 '평(자진 삭제) 문화 등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거나 '가입한 판사들의 양식을 믿자....는 건 지나치게 나이브한 생각이다'는 입장이 8명 정도
 - 위 글에 반대하면서 '법관 스스로의 자정과 검열을 거친 끝에 올라오는 글인 만큼 언론을 통해 내용이 공개돼도 상관없다'거나 '판사의 본분에 어긋날 정도는 거를 수 있는 양식을 갖추었고,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글은 도태될 것이므로 굳이 노출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 5명 정도
 - 운영진은 3. 4. '취지는 공감하나 운영자의 임의삭제는 위법하고 회원들의 견해가 다양할 수 있어 운영방침으로 삼기는 어렵다'는 중전 입장 고수함
- 일부 글 자진 삭제 예고 및 삭제
 - 2차 논의 직후인 3. 2. 한 법관이 '도대체 언제부터 합의부장이 기록 안 보는 게 당연한 일이 되었냐'는 비판글을 올리면서 스스로 '조만간 평(삭제) 예정'이라는 의사를 밝혔고, 위 합의부장 비판글에 동의하는 댓글 및 자진 삭제에 관한 찬반 댓글 후 자진 삭제
 - 중전에도 게시글이 논란을 일으키자 사후에 스스로 삭제한 예가 드물게 있었으나, 글을 올릴 때부터 스스로 삭제를 예고하고 시행한 것은 처음임



3. 대응방안 검토

■ 착안점 및 고려사항

● 대응방안의 두 가지 목표

- 카페 게시글의 유출로 인하여 사법부의 신뢰에 악영향이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하여, ① 소극적으로는 민감한 사안에 관한 무분별한 글의 게시를 방지하여야 하고, ② 적극적으로는 작성된 글의 유출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

● 소극적 목적 상당 부분 달성 ⇨ 소극적 효과 유지하면서 적극적 효과 달성 위한 추가 방안 필요

- 앞서 본 일련의 경과 및 조치를 통해 가입 법관들이 ㉠ 게시글이 언제든 유출되어 언론에 보도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자각하고, ㉡ 민감한 사안에 관한 무분별한 글 작성을 자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측면의 소극적 목적은 상당 부분 달성된 것으로 보임
 - 다만 위와 같은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는, 2월 2주 이후 매주 카페 내 외부의 강한 자극이 지속되었기 때문으로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표현의 자유 무한 발산의 욕구가 급속히 회복될 것이므로, 소극적 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 환기 방안 필요
 - 유출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 방안 검토 필요
- ##### ●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및 반발가능성 대비 ⇨ 반발 최소화 방안
- 특정 카페 활동에 대한 개입은 여전히 표현·결사의 자유 등에 대한 중대한 억압으로 비춰져 반발을 부르거나 개입 자체로 언론의 주목을 받을 우려 큼
 - 일련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가입 법관, 특히 운영진의 경우 게시글을 방치할 수 밖에 없다거나 게시글 유출을 방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반발 가능성 큼
 - 다만 그러한 반발을 우려하여 추가조치를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려우므로, 반발을 최소화하는 대응방안을 검토, 시행하여야 함



■ 적극적 방안 검토

● 카페 운영진에 대한 운영방식 개선 권유 ⇨ 검토 필요

- 그 동안 반발 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카페 운영진에 대한 직접 권유를 자제하여 왔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카페 내부에도 게시글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여 카페 운영방식 개선을 희망하는 법관이 상당수 생기는 등 명분과 제반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으므로, 반발을 최소화하는 한도에서 직접 권유를 검토할 시기가 되었음
- 법원행정처 및 사법행정라인이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최대한 위압적이지 않도록 느껴지는 방법과 내용으로 카페 운영방식의 개선을 권유할 필요 있음

● 개선 권유 주체, 시기 및 방법 검토

- 카페 운영진 소속 법원장의 직접 권유는 부적절하고, 법원장을 통하여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선배·동료법관을 추천받아 권유하되, 카페 운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카페 개설자와의 인간적 신뢰관계 등을 감안하여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고려 가능함
- 법원장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법관이 있다면 카페 개설자보다 후배 법관이 먼저 권유해 보는 것도 파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고려될 여지가 있음
-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의견과 동시에 권유할 경우 선배의 권유가 아닌 일종의 행정조치로 받아들일 가능성 ⇨ 권고의견 제시 후 적어도 1~2주 정도 논의가 무르익은 후에 권유함이 상당(그 사이 카페 내부 논의가 이루어지면 더욱 자연스러운 것임)
- 운영진의 성향상 인간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솔하고 정중한 ‘상의’의 형태가 바람직 ⇨ 선배의 훈계 등으로 느껴질 경우 역효과 가능성 있음
- 운영진에 대한 구체적인 권유 방안은 해당 법원이 운영진과 대화 과정에서의 상황 전개 및 운영진의 반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안을 선택, 권유함이 자연스러우나, 일응 상정가능한 몇 가지 방안의 적정성을 검토함



● 카페 운영에 관한 구체적 권유 방안 검토

- 문제 소지가 있는 글의 유출을 차단하는 운영방안으로는 ① 카페 운영진이 문제될 글을 선별하여 직권으로 또는 가입 법관의 건의 등을 통하여 삭제하는 방안, ② 모든 게시글에 대하여 일정기간(예 : 1주) 경과하면 자동으로 일괄 삭제되도록 하는 방안, ③ 모든 게시글에 대하여 일정기간 경과하면 자동으로 일괄 비공개 처리되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함
- ①안의 경우 비례성의 측면에서 위험성이 적은 활동 영역은 최대한 보장하면서 문제될 글에 한하여 조치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 운영진을 비롯한 일부 가입 법관이 동료 법관의 글을 자신들이 선별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매우 강한 반발과 부담감을 이미 반복하여 드러낸 바 있고, ㉡ 문제글의 선별 기준이 불명확할 수 밖에 없어 해당글 작성자가 삭제에 반발하여 논란이 되거나 반발차원에서 글의 내용이 유출되는 등의 부작용 큼 ⇨ 부정적이고 실현가능성 희박함
- ②안의 경우 ‘문제글 선별’에 대한 운영진의 반발과 부담을 덜어주면서 유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가입 법관의 강한 반발 예상되고, 운영진의 성향상 수용가능성 희박함
- ③안의 경우 앞에서 본 ‘문제글 선별’과 ‘동료 법관 작성글의 삭제로 인한 카페의 취지 무력화’에 대한 운영진의 반감을 최소화하면서도 유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적정**
- ③안의 경우에도 운영진의 성향상 거부할 가능성이 있음 ⇨ 권유의 주체, 시기 및 방법 등이 중요하고, 일괄 비공개 처리된 후 열람을 희망하는 가입자는 운영자의 별도 허가를 거쳐 열람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개별 열람을 통하여 카페에서 이루어진 법관들의 자유로운 논의가 사장되지 아니함으로써 익명 게시판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음을 적극 설득할 필요
- ※ 공개기간 중 유출가능성이나 사후 개별 열람과정에서의 유출가능성 등의 위험은 어차피 카페를 전면 폐쇄하지 않는 불가피함
- 기타 방안 검토
- ① 기술적 사항 개선 권유 : 복사 금지, 마우스 우측 버튼 작동 금지, 복사



링크 생성 금지 등 기술적 조치(일명 ‘팜’ 금지) 필요

※ 다른 실명, 익명 카페나 블로그 등도 무단복사(퍼가기) 금지를 위해 흔히 취하고 있는 기술적 조치이므로, ‘인터넷 블로그 등을 보면 보통 그런 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카페에도 그런 조치가 되어 있는지’ 묻는 형태로 자연스럽게 권유할 수 있을 것이고, 운영진의 거부감도 크지 않을 것임

- ② 각급 법원 수석부장 등의 공지글 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에 대한 안내공지 등을 통하여 전국 법관들을 상대로 ‘익명 게시판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게시글 일정 기간 경과 후 비공개 처리,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글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정작용 등’ 을 당부함으로써 카페 내부에서 자발적인 개선 움직임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신중 접근 필요** : 카페 운영방식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기존 가입 법관을 통한 자발적 변화의 장점이 있으나, 위 카페를 명시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카페의 존재 자체가 외부의 주목을 받고, 갑작스런 신규 가입자 유입으로 게시글 유출이나 자정작용 상실의 가능성이 커질 위험도 있으며, 운영진의 입장 변화 없을 경우 효과 미약할 것이므로 함

※ 가입 법관만을 대상으로 하여 공지하는 방법의 경우는 장점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 가입 법관의 구체적 명단을 파악할 방법 없음

- ③ 카페 실명 전환, 카페 활동 일시중지, 카페 폐쇄 등 근본적 해결책 권유는 부적절함 ⇨ 수용 가능성 희박함에도 오히려 그러한 권유 자체로 논란과 언론의 주목 대상 가능성 큼

※ 위와 같은 언급은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운영진이 여러 사정상 운영에 부담을 느껴 자발적으로 유사한 결론에 이르도록 함이 바람직 (자발적으로 폐쇄 하더라도 폐쇄 사실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임)

■ **소극적 효과 지속을 위한 노력 필요**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의견 및 이에 따른 카페 내부 문제제기 및 개선 논의 유도 노력 등 지속되어야 함
- 기보고한 바와 같이 현실적 어려움은 크나, 신중함을 갖춘 선배 법관이 위 카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 계속 검토 필요



■ 종합검토 : ③안을 중심으로 적극적 효과 기대가능한 다각적 방안 검토 필요

- 현재의 위축 효과 지속 여부를 포함한 카페 활동의 지속적 추이 관찰 필요
-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수준 및 강도에 따라 보다 강경하고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검토할 여지도 있음. 끝.



별지 1 김영란법 관련 본글 및 댓글

03.04. 08:33 제목 김영란법 국회에서 통과되었네요.

검경권력 비대화의 우려도 있지만, 저는 원칙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앞으로 변호사들하고 식사는 못하겠네요.^^
식사를 하더라도 반드시 각출하거나, 우리가 내야하는거겠죠?ㅋ

댓글 9

03.04. 08:40 저는 좀 우려되는 면이 있습니다

03.04. 09:46 제 측으로도 별로 느낌이 좋지 않아요... 투명성, 공정성, 저도 극히 위 두 가지를 지향하지만, 김영란법으로 바뀔 정도의 비투명성, 비공정성이 아닌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요..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부작용들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지켜봐야겠지요.

03.04. 10:26 걸면 걸린다^^ 기자들이 불러 다니게 될 것이란 이완구 총리가 기자들에게 했던 말이 생각나는데요.

03.04. 11:30 근데 1회 100만원 상당 월 합계 300만원 상당 식사나 향응? 받아보신적이 있나요? 저는 회사생활 십수년 간 구경도 못했는데 제 인간관계가 이상한건지? 스폰서검사 스폰서 공무원 뿌리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저는 대찬성입니다.

↳ 03.04. 15:51 1박 2일 정도 제주도에 가서 호텔에 묵고 골프를 치면 충분히 넘어갈 것도 같은데요. ^^ 물론 저도 아직 그러한 향응을 받아보지는 못 하였습니다. ^^;

03.04. 17:56 (바로위 제주도 댓글 관련)요즘도 간 크게 그런 향응을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계신가요? 뭐 주변에 말하고 다니진 않겠지요. 당연히 잘못된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03.05. 09:52 직급이 올라갈수록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그나마 매우 소수이지만 계시긴 한 것 같습니다.

↳ 03.05. 12:44 그렇기에 예전에 관행으로 받아들여졌던 뇌물수수 그러나 직무관련성이 부정되어 불처벌됨으로써 국민의 사법불신의 근원이 된 바로 그 관행(이라 쓰고 범행이라 칭한다)을 없애야 한다고 하위법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 03.05. 11:39 법원보다는 검찰에 더 많아 보이긴 해요. 근데 예전에 들었던 농담 중에 "검사랑 밥 먹으면서 밥값 안 내는 사람은 기자뿐이다"라는 얘길 들은 적이 있네요.



별지2 '민감글 자진 삭제 제안'에 대한 댓글

제안 글 2. 27. 1차 게시 및 3. 1. 구체적 방안 포함된 2차 게시에 대한 댓글 전문

※ ① '이사야'는 이 사건 카페 '이판사판야단법석'의 줄임말임

② '유스티티아'는 네이버에 개설된 여판사 모임으로, 비공개 카페이지만 닉네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익명이 아니고 작성자를 사실상 특정할 수 있음

02.27. 08:26 문체에 은근 중독성이 있어요. 다음 글 꼭 이어서 써주세요~^^

02.27. 14:27 글쓰는분의 문제의식에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안 지켜준다는....

02.27. 19:16 법관들이라 이 정도는 지킬 소양이 있을거 같아요.

02.28. 05:52 아 저도 이 사건 알아요. 보면서 이사야 떠올린것도 똑같네요. 정보의 축적에 좀 문제가 생기더라도, 자유로운 분위기 유지를 위해서는 퍼가기 금지 복사 금지 평 활용 등이 적극 이루어지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03.01. 03:52 좋은 고민 글 감사합니다. 원글님의 이사야에 대한 애정이 듬뿍 느껴지네요. 저도 유사시 외양간 버리기가 불가피하겠다고 막연히 생각했던 사람으로서 반성하고, 소중한 공간을 지킬 수 있는 대책 강구에 머리를 굴리게 되는군요.

유스랑 다르다는 점은 공감합니다. 일단 유스는 사직해도 회원 자격이 유지되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반대입장입니다만, 실명활동으로 이미 친분이 있는 터라 그런 것 같아요. 한편 평문화는 유스에도 드물지만 있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평할 권리는 당연한 글쓰이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설령 댓글이 달려 있어도 말입니다. 다만 운영진에게 평 권한을 주는 것은, 운영진이나 다른 분들 의견이 궁금하네요.

└ 03.01. 04:05 운영진에게 삭제, 검열 권한을 주는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이사야 운영진이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는 않을 듯합니다만. 반대로 글을 삭제할 '의무'가 운영진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여러 회원들이 댓글로 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낸다면 그때 운영진이 최종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원글님께서 급한 대로 평문화부터 제안하신 것 같고, 저도 당장 다른 수는 안 떠오르는데, 다른 아이디어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남성회원들이 기자와 친분이 있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고, 그래서 익명이기까지 한 이곳이 유스보다 좀 더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걱정은, 제 근거없는 편견의 발로이기를 바랍니다...

03.01. 11:33 글쓰신분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유스는 사직시 회원등급이 조정되어서 일부 게시판 글은 접근이 불가능해진다고 해요. 아무래도 민감한 사안보다 아이들 키우는 얘기, 아주머니 얘기가 많으니 감사하게도 외부의 관심이 덜하겠지만요.

03.01. 21:34 유스티티아는 뭔가요?;;

└ 03.02. 09:58 여판사들의 친목카페랍니다...거기도 비공개친목카페예요

03.02. 00:44 노파심에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여기에 쓰시는 글들 모두 기자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별로 틀리지 않을겁니다. 코트넷에 쓴 게시물들이 왜 등록되자마자 바로 언론 보도가 되겠나요. 언론인을 가족으로 둔 법원 직원, 법관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 카페의 존재도, 이 카페에 올려진 글들도 이미 상당 부분 공유되고 있을 것이고, 다만 그 취재 과정의 윤리성에 관한 비난 가능성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도되고 있지 않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ㄴ 03.02. 07:33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사들의 양식을 믿자..라는건 지나치게 나이브한 생각으로 보입니다.

03.03. 09:49 얼굴만 가렸지 법복을 입은 채 이 공간에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의식하고 있는 이상 우리 스스로의 자정작용과 검열작용을 거친 끝에(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올라오는 글들인 만큼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고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의 글들조차도요(평한 글도 포함하여). 법복 안의 신비가 좀 깨질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설령 알려진다해도 이상하게 전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유스보다도 이사야의 언론 노출이 더 두려운 이유는, 유스는 보다 사적인 내용들이라 언론 입장에서 보도가치가 없는 반면에 이사야는 법원과 사회에 대한 보다 공공적인 소재가 등장하기 때

03.03. 09:50 문인것 같아요.

ㄴ 03.04. 02:10 이 댓글에 공감합니다

03.04. 00:10 운영자중 1인입니다. 이사야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본문글 쓰신 분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다만 명백하지 않은 기준에 의한 운영자의 임의삭제는 위법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견해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운영방침으로 삼기 어렵다는 양해말씀드립니다. 종전 공지글인<http://cafe.daum.net/leeprosapro/Z7cb/10> 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ㄴ 03.04. 01:26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운영자님에게 다양한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은 회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카페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시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카페 회원들은 지금의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가 오래 유지되길 바라는 마음이 다른 무엇보다 크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운영진으로서 좀 더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통해 무엇보다 이러한 회원들의 바램부터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ㄴ 03.04. 01:27 그리고 운영자님이 걱정하시는 '명백하지 않은 기준에 의한 임의삭제의 위법성'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 회원들의 사전양해가 전제된다면 위법할 일이 없을 거 같구요. 막연히 '견해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 수립 자체를 포기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양해나 원칙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노력을 해보시는 것이 지금 운영진이 하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ㄴ 03.04. 01:28 좋은 카페를 만들어주신 것에 감사하고, 지나친 부담을 드릴 생각은 없지만, 카페지기로서 회원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시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건 '표현의 자유의 보장 vs. 침해'의 문제만이 아니라 '운영자로서 또는 글쓴이로서의 책임 vs. 무책임'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되네요.

03.04. 02:18 바로 위 댓글(운영진의 댓글에 대한 댓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공간 자체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기탄없이 오간 글들이 소중한 것이고, 모두 판사임을 걸고 쓴 글인 이상

ㄴ 03.04. 18:46 오해가 있으신데, 기탄없이 오간 글을 막거나 바로 없애자는게 아닌것 같아요 축적할 필요는 없으니 민감한 글은 일정기간후 정리하자는 거예요 그 래야 이 공간을 지키고 기탄없는 이야기도 계속 나눌수있겠죠

03.04. 14:16 판사임을 걸고. . 라는 부분에서 드는 의문. 회원님들은 동료나 위아래 계신 분들을 판사라는 이유로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왜 이사야 회원 판사님들을 완벽한 존재로 상정하여 글 내용과 유출에 대한 걱정을 덜으려 하시는듯한지. 제가 너무 비판적인건지?



ㄴ 03.04. 18:06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예요. 불완전하지만 판사의 본분에 어긋날 정도의 내용들은 거를 수 있는 양식정도는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글이 올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예외적일 겁니다. 이 안에서는 별 대꾸조차 없을 것이고요. 도퇴글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판사 중에 그런 양식 정도만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이또한 굳이 노출할 필요는 없어도 노출을 너무 염려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임을 자각할 수는 있겠지요.

ㄴ 03.04. 18:50 도퇴글이 항상 조용히 사라질까요? 건강한 게시판이라면 오히려 한 바탕 토론속에 사라지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건 조용히든 떠들썩하게든 그런 도퇴글이 외부의 좋은 먹이감이라는거..

ㄴ 03.05. 12:39 제가 잘 몰랐던 용어인가 해서. . 도태되는 글 말씀이신거지요?

03.05. 09:50 회원 자격이 제한된 익명 카페에서 주의해야 할 글의 내용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제안합니다.... 뜬금없나...?